

審 查 報 告 書

1999. 12. 21
總務委員會

1. 審查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12. 14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12. 16
- 라. 上程日字 : 1999. 12. 21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 : 自治行政課長 方景泰)

가. 提案理由

- 행정자치부에서 화학공단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평시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 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코자 화재방요원 1명의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별정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,
-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.

나. 主要骨子

-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으로 신설되는 화재방요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(안 제2조의2).

- 제3조제2항중 “규칙이”를 “조례가”로, “소속기관의 장”을 “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”으로 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함(안 제3조제2항).
- 제7조중 “단위기관에서 전보”를 “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”로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야별 사무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함(안 제8조제1항).

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화생방요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,
- 그동안 동조례를 운영하면서 개선·보완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였고,
 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“비서”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,
-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 사항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시한 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”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

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제 123 호
의 결 년 월 일	1999. 12. 24. (제 47 회)

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12. 14.

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14.
제출자 : 서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행정자치부에서 화학공단 소재지역을 대상으로 평소 방호능력과 화학공단의 누출 사고등 대처능력을 강화코자 화생방요원 1명의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이를 별정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,
-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.

□ 주요골자

-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으로 신설되는 화생방요원을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(안 제2조의2).
- 제3조제2항중 “규칙이”를 “조례가”로, “소속기관의 장”을 “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”으로 개정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함(안 제3조제2항).
- 제7조중 “단위기관에서 전보”를 “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”로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야별 사무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비서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함(안 제8조제1항).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.

○ 관련법규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
- 행자부 자제 12200-683('99. 11. 9) 및 충남 행정 12200-695('99. 11. 18)
 - 화생방 전담기능 인력보강 승인공문
- 충남 총무 12100-793('99. 11. 22)
 -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공문

○ 행정자치부 정원 승인현황

직 명	직 급	정 원	비 고
화생방요원	지방별정7급상당	1명	

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고,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화생방요원

제3조제2항중 “규칙이”를 “조례가”로, “소속기관의 장”을 “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단위기관내에서 전보”를 “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2(별정직공무원의 지정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2 내지 9 (생략)</p> <p>제3조(임용권자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<u>소속기관의 장</u>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전보)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<u>단위기관에서 전보</u>,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보 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.(단서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의2(별정직공무원의 지정)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화생방요원</u></p> <p>3 내지 10 (현행 제2호 내지 제9호와 같음)</p> <p>제3조(임용권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조례가</u>-----</p> <p><u>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</u>-----</p> <p>제7조(전보) -----</p> <p>-----<u>단위기관내에서</u></p> <p><u>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8조(근무상한 연령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다만, 시장</u></p> <p><u>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